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다중이용시설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목적

-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 및 안전의식 저변확대를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 소방대상물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및 시민들의 잠재된 안전의식 자극을 통한 『안전도시 부산』 창출
 - ☞ “불법행위 = 경제적 손실”이라는 논리의 보편화를 통한 준법의식 고취

시행 내용

-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
 - ◆ 본부 예방안전담당관 및 각 소방서 예방안전과

본부	중부	부산진	동래	북부	사하
760-5714	760-4162	760-4265	760-4367	760-4465	760-4576
해운대	금정	남부	강서	기장	항만
760-4665	760-4765	760-4862	760-5064	760-5174	760-4966

신고대상 접수 및 처리방법

- ◆ 신고접수 :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
- ◆ 신고대상 : 비상구 폐쇄, 훼손, 물건적치, 장애물 설치 등 불법행위
- ◆ 신고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접수창구), FAX,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
- ◆ 신고절차 : 6하 원칙에 의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불법행위를 했는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처리 절차

- ◆ 신고접수 ⇒ 현장 확인 ⇒ 포상심의 ⇒ 포상금 지급
 - ☞ 부산광역시 주민(주민등록 기준)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

포상금액 : 1건당 5만원 (1인당 연간 300만원, 월 30만원 이내로 제한)

- ◆ 지급시기 :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 ◆ 지급방법 : 신고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